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55
------	------

2021. 6. 1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27일, 임만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6.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임만균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원에는 공인노무사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서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 이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에 있어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사 및 공단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함께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감사 조직을 통해 해당 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은 업무상, 인사상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저하와 함께 공기업 등의 방만 운영이 문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5대 공사 및 공단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운영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2호)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해 노동자 지원 시설 등에 대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과 추진절차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서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임.
- 2021년 6월 현재 서울시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6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6,955억원에 달하고 있음.

< 연도별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 >

연 도	2018	2019	2020	2021(6월)
사무 수(개)	392	388	403	406
예산(억원)	7,081	8,190	9,433	6,955 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 주관부서의 사전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 시의회의 동의, ▶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공모·선정, ▶ 주관부서의 위탁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됨.

< 민간위탁 추진절차 >

구 분	신규위탁(공모)	신규위탁(수의)
사전조사 (주관부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 조사	
추진계획 (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행사무 적정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행사무 및 수탁 기관 적정성 심의 </div>
의회동의 (주관부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시의회 동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시의회 동의 </div>
예산편성 (주관부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시의회 의결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시의회 의결 </div>
수탁기관 선 정 (주관부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공모 </div>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비용 심사 (계약심사과)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div>
협약체결 (주관부서)	위탁 협약 체결	
사후관리 등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소통공유방,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	

1) 2020년 12월 31자로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서울물재생 시설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위탁 사업비 1,970억원이 감소되었음.

- 이 중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변호사·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시민단체 추천자, 대학교수, 시의원·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6명에서 9명), 수탁기관의 선정을 끝나면 자동 해산됨(조례 제9조).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개정안의 검토(안 제9조)

- 개정안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촉 대상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중 하나로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 을 제시하고 있고(제7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 고용유지 및 승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등과 ▶ 정규직 비율, 이직률, 노동복지, 노동형태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 ▶ 고용유지 및 승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등
 - ▶ 정규직 비율, 이직률, 노동복지, 노동형태 등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 ▶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시행규칙 §4②)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시행규칙 §4①)

-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가산점 부여 요건에 고용과 노동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서 노동분야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임.

○ 가산점 부여표(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16.6점)	
		배점한도	평 점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노동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7	-5 (각 -1)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0.5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0.5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예, □ 아니오)	-1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주주(√, □), 노동자(임직원)(√, □), 해당없음(√, □)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해당없음 (√, □)	
- 확인(첨부)내용	
· 법인등기부 등본(√,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최근 들어 노동 관련 전문시설의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경영·경제지식과 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위촉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노동 관련 시설의 적격자 심의위원회 현황 >

위탁사무명	소관부서	심의일	노무사위원 수
서울특별시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정책담당관	'20.8.5.	1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관	노동정책담당관	'20.8.5.	1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정책담당관	'20.12.9.	1
노동복합시설	노동정책담당관	'21.5.24.	2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노동정책담당관	'18.5.29.	4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정책담당관	'19.8.27.	1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정책담당관	'19.10.29.	2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정책담당관	'20.10.14.	2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정책담당관	'20.10.14.	2

-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에 노동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임만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임만균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경영,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7명)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원에는 공인노무사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운영·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서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에 있어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를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p> <p>1. (생략)</p> <p>2. <u>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u>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3. ~ 6.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u> -----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